

추가약정서 (판매기업용)

(실적부 미래채권담보대출용)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본인은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_____(이하 “구매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미래채권 담보대출(실적부)」을 위한 _____년 _____월 _____일자 여신거래약정서(이하 “원 약정서”라 함, “원 약정서”와 추가약정서를 포괄하여 “대출약정”이라 한다)에 추가하여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하며, 은행의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이 적용됨을 승인한다.

제 1 조 (용어의 정의)

- ① “구매기업”이라 함은 협력기업으로부터 경상적인 상거래로 물품 등을 반복적인 거래형태를 가지고 발주서등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기업으로 은행과 미래채권담보대출협약서(실적부)를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 ② “추천”이라 함은 미래채권담보대출(실적부)을 지원 받기 위해 구매기업이 은행 과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서 담보인 경우에 한함)으로 협력기업(판매업체)과의 거래실적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용자 대상으로 추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2 조 (입금계좌 지정)

- ① 대출금 약정계좌 또는 매출채권 만기시의 현금 입금계좌는 다음 계좌로 한다.
예금주 : _____, 계좌번호 : _____
- ② 전항의 입금계좌는 구매기업이 선택한 전자결제(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카드, 구매카드대출, 현금결제등)방식의 입금계좌와 동일한 계좌로 지정 하여야 하며,본인은 결제계좌나 결제방법 및 전자결제은행을 당행의 동의 없이 변경하지 않기로 한다.
- ③ 전자결제은행의 변경시에는 즉시 미래채권담보대출(실적부)을 전액 상환하기로 한다.

제 3 조 (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을 제한 할 수 있기로 한다.

1. 본인이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 또는 은행 내규에 따른 신규여신금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인터넷 등 은행 전산상의 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은행에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를 못하거나 은행이 대출을 할 수 없는 경우
3. 구매기업이 동 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은행에 대하여 지급을 연체한 경우
4. 구매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은행에 변제해야 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연체한 경우
5. 본인의 채권자가 구매기업에 매출채권을 대상으로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6. 본인에게 제공한 본대출 원리금 또는 타여신의 일부라도 연체된 경우

제 4 조 (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전산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인터넷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은행이 본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한 경우에는 은행은 그에 따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한다.

제 5 조 (대출약정의 종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약정”에 따른 은행의 본인에 대한 대출의무는 면제되고, 본인의 은행에 대한 채무는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은행에 변제하기로 한다.

1. 은행이 구매기업과 체결한 “미래채권담보대출협약(실적부)”이 종료된 경우
2. 구매기업이 부도를 내거나 파산, 화의, 회사정리절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구매기업이 은행에서 정한 미래채권담보대출 약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4. 구매기업에서 협력업체 추천 취소를 은행에 통보한 경우
5. 본인이 타행과 중복 약정을 체결 한 경우
6. 은행의 동의없이 결제방법 및 전자결제은행을 변경한 경우
7. 구매기업에서 추천한 협력기업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납품실적등)
8. 기타 대출약정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제 6 조 (본추가약정의 효력)

본 추가약정, 원 약정,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 약정서의 효력은 본 추가약정이 가장 우선하고, 다음으로 원 약정,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순서로 한다.

20 년 월 일

채무자(본인) _____ (인)

주 소 _____